

토론회

법인세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 일 시 | 2016년 11월 18일(금) 오후 2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회 순 ————■

- 사 회
 - 조 동 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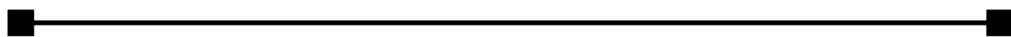
- 주제 발표
 - 오 문 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 토 론
 - 이 만 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송 헌 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질의·응답

- 폐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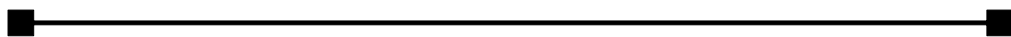
■————— 목 차 —————■

■ 발 제 문

법인세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9
: 오 문 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 토 론 문

법인세 인상 거론할 때 아니다	21
: 이 만 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법인세 인상을 논하기 이전에 준조세 부담부터 없애라 ...	25
: 송 헌 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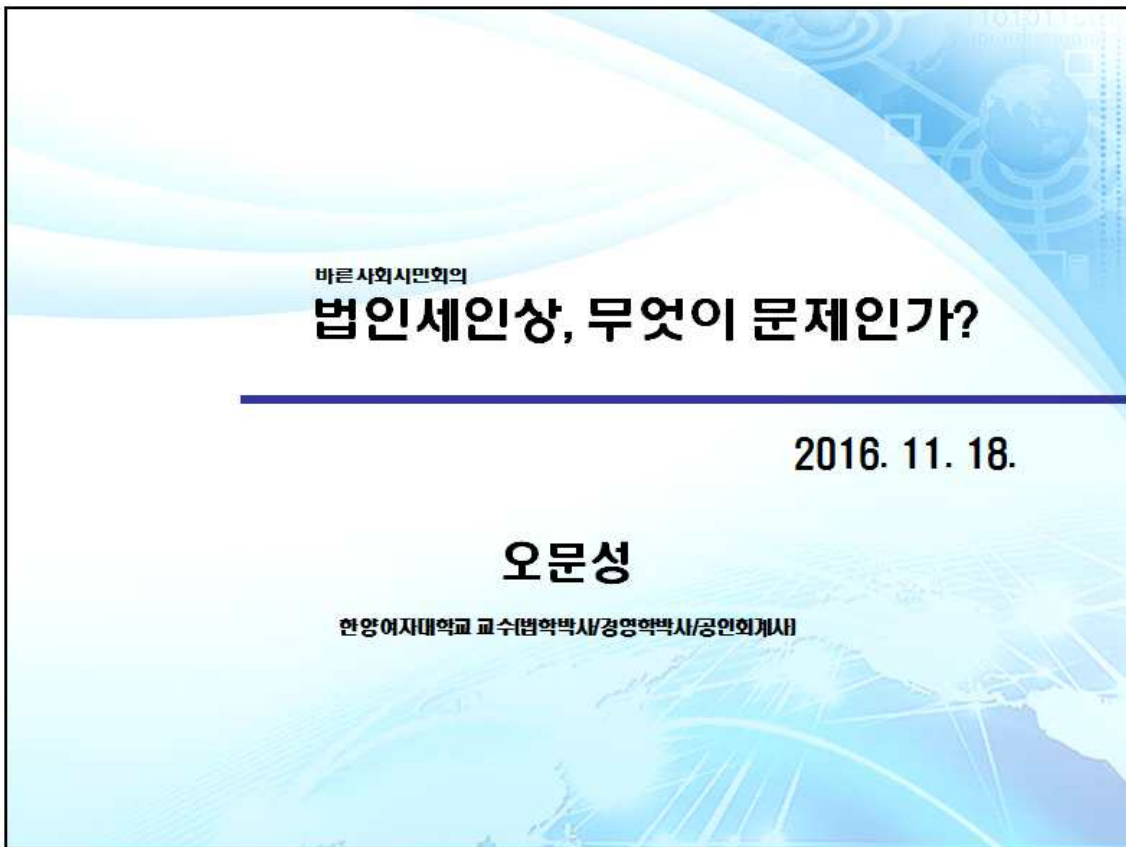


<정책토론회> 법인세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발표

법인세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오 문 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목 차

- I. 대내외 경제여건
- II. 법인세

목 차

- I. 대내외 경제 여건

1. 2015~19년 기본방향 및 목표

- ◆ 경제활력 회복과 구조개혁을 적극 뒷받침
- ◆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 강화
- ◆ 재정누수 방지 및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 가속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

	' 15	' 16	' 17	' 18	' 19
▣ 관리재정수지	△33.4	△37.0	△33.1	△25.7	△17.7
(GDP대비, %)	(△2.1)	(△2.3)	(△2.0)	(△1.4)	(△0.9)
※ 통합재정수지	7.0	4.8	10.1	20.4	30.6
(GDP대비, %)	(0.4)	(0.3)	(0.6)	(1.1)	(1.6)
▣ 국가채무	595.1	645.2	692.9	731.7	761.0
(GDP대비, %)	(38.5)	(40.1)	(41.0)	(41.1)	(40.5)

* '15년의 경우, 재정수지는 본예산(국회 확정) 기준, 국가채무는 전망치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15.9.8. 국가재정운용계획

2. 중기재정수입 전망

- ◆ 재정수입은 '15~'19년 기간 중 연평균 4.0% 증가할 전망
- ◆ 국세수입은 '14~'18년 계획보다 감소, 연평균 3.7% 증가할 전망
- ◆ 세외수입은 매년 26~27조원 수준 유지
- ◆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지속 증가

중기 재정수입 전망

(단위: 조원, %)

	' 15		' 16	' 17	' 18	' 19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수입	382.4	377.7	391.5	406.8	426.6	446.6	4.0
○ 국세수입	221.1	215.7	223.1	233.1	244.2	255.6	3.7
○ 세외수입	27.6	28.3	27.2	26.6	26.7	26.7	△0.8
○ 기금수입	133.6	133.6	141.2	147.0	155.8	164.3	5.3

* '15년은 국회 확정예산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15.9.8. 국가재정운용계획

3. 조세부담율과 국민부담율

◆ 조세부담률은 세수신장성 약화로 18% 내외 전망

◆ 국민부담율은 16~19년 연평균 25% 내외 전망

중기 조세부담율 전망

(단위 : %)

	’15*		’16	’17	’18	’19
	본예산	추경				
■ 조세 부담율	17.5	18.1	18.0	18.0	17.9	17.8
■ 국민 부담율	23.9	24.7	24.9	24.9	24.7	24.6

* ’15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2015.9.8. 국가재정운용계획

※

3. 중기재정지출 전망

◆ 재정지출은 ’15~’19년 기간 중 연평균 2.6% 증가 예상

	’15*		’16	’17	’18	’19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지출 (증가율)	375.4 (5.5)	384.7 (8.1)	386.7 (3.0)	396.7 (2.6)	406.2 (2.4)	416.0 (2.4)	2.6
① 예산·기금별 구분							
○ 예산지출 (비중)	260.1 (69.3)	263.6 (68.5)	263.1 (68.0)	271.4 (68.4)	275.7 (67.9)	278.6 (67.0)	1.7
○ 기금지출 (비중)	115.3 (30.7)	121.1 (31.5)	123.6 (32.0)	125.3 (31.6)	130.5 (32.1)	137.3 (33.0)	4.5
② 지출성격별 구분							
○ 의무지출 (비중)	172.6 (46.0)	173.5 (45.1)	183.4 (47.4)	195.0 (49.1)	206.5 (50.8)	218.7 (52.6)	6.1
○ 재량지출 (비중)	202.8 (54.0)	211.1 (54.9)	203.3 (52.6)	201.8 (50.9)	199.7 (49.2)	197.3 (47.4)	△0.7

자료 : 기획재정부 2015.9.8. 국가재정운용계획

※

1. 대외경제에 대한 전망

- ◆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美 금리인상 등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및 중국 성장 둔화 등 하방위험 상존
- ◆ 신흥국의 경우 점차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이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 브렉시트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 ◆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향후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이 전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고 특히 15%의 단일 법인세율채택 공약이 다른 국가의 법인세를 인하여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짐

•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IMF, '15.7월)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세 계	3.4	3.3	3.8	3.8	3.9	3.9
- 선진국	1.8	2.1	2.4	2.2	2.1	2.0
- 신흥국	4.6	4.2	4.7	5.0	5.1	5.2

자료 : 기획재정부 2015.9.8. 국가재정운용계획

※

2. 대내 경제에 대한 전망

- ◆ (2016년 이후) 세계경제 회복세,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 등으로 '16년 이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 예상
- ◆ 세계경제 회복세, 세계교역량 개선 등으로 수출 회복 예상
- ◆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지속, 4대부문 구조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가시화 등이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 다만, 중국 경제 둔화, 브렉시트와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으로 인한 경기의 불확실성 증가, 가계부채 부담, 생산가능인구 감소('17년부터) 등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 (IMF)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추가적인 재정정책을 뒷받침할 여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
- ◆ (OECD) 우리나라 성장률이 4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을 권고 (OECD WEO, '15.6월)

※

II. 법인세

목 차

II. 법인세

1. 법인세 동향

1. 외국의 법인세율 관련 동향

- ◆ OECD 평균법인세율은 1985년 43.4%에서 1995년 34.0%, 2005년 26.2%, 2015년 23.2%로 1985~2015년 중 총 $\Delta 20.2\%$ 가량 인하됨
- ◆ 2000년대에는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국가간 자본유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 지속
- ◆ 특히 글로벌 금융·재정위기 이후 많은 나라에서 자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음
- ◆ 법인세 인상국가는 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가 중심이 됨

구분	내용	국가수
① 유지	프랑스 · 호주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아일랜드 · 폴란드 · 네덜란드 · 터키	8
② 인하	한국 27.5%(07~08) → 24.2%(09) 미국 39.26%(07) → 39.25%(08) → 39.13%(12) → 트럼프 미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15.0% 단일세율을 제시함 독일 38.9%(07) → 30.18%(08) 영국 28.0%(08) → 20.0%(15) → 브렉시트 이후 최근 15.0%이하로 인하할 예정 일본 39.5%(07~13) → 35.6%(14) → 34.62%(15) 캐나다 (34.0%→28.0%), 핀란드 (26.0%→20.0%), 헝가리 (20.0%→19.0%), 덴마크 (25.0%→23.5%), 노르웨이 (28.0%→27.0%), 스웨덴 (28.0%→22.0%), 뉴질랜드 (30.0%→28.0%), 이탈리아 (33.0%→27.5%), 스페인 (32.5%→28.0%), 스위스 (21.3%→21.1%), 이스라엘 (29.0%→26.5%) 등	20
③ 인상	그리스 25.0%(07)→26.0%(13), 아이슬란드 18.0%(07) → 20.0%(11), 칠레 17%(07) → 22.5%(15), 멕시코 28%(07) → 30%(10), 포르투갈 26.5%(07) → 29.5%(15) 등	6

•자료: OECD Tax Database, IBFD;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재인용

1. 외국의 법인세율 관련 동향

◆ 주요국 기간별 법인세율(최고세율기준/surtax포함)의 변동 추이(OECD stat.)

	2000년	2005년	2010년	2016년
캐나다	42.43%	34.18%	29.4%	26.7%
프랑스	37.76%	34.95%	34.43%	34.43%
독일	52.03%	38.9%	30.18%	30.18%
일본	40.87%	39.54%	39.54%	29.97%
영국	30%	30%	28%	20%
미국	39.34%	39.29%	39.21%	38.92%
한국	30.8%	27.5%	24.2%	24.2%

•자료: OECD Tax Database

-3-

2. 국내 법인세 개정 동향

- ◆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법인세수 확대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 기업의 영업이익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법인세수가 2012년 45.9조원(징수 기준)에서 2013년 43.9조원, 2014년 42.7조원으로 감소되었으나 2015년에는 45조원으로 증가
- ◆ 법정 최고 법인세율
 - ◆ 1990년대 초 30%대에서 2011년 22%로 인하,
 - ◆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2008년 감세정책 이후 19%대에서 16%대로 낮아져 있음
- ◆ 최근 법인세 개편 세율 조정보다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 ◆ 최고구간 최저한세율 인상('11년 14% → '12년 16% → '13년 17%)
 - ◆ 임시·고용 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기업 기본공제율 1%p 하향조정 및 폐지('13년 3% → '14년 2% → '15년 0%)
 - ◆ R&D비용 세액공제 중 대기업 당기분 방식 공제율 상한의 하향조정('13년 3~6% → '14년 3~4% → '15년 2~3%) 및 석·박사 인력비 최저한세 적용배제 폐지('12년) 등을 통해 대기업 세제혜택을 축소
 - ◆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신규 조세특례제도를 도입

-3-

3. 법인세율에 대한 논쟁

◆ 법인세율 인상논리

- ◆ 경제위기 이후 훼손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법인세 감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감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잠식하여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큼
- ◆ 현행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중앙정부 기준)은 22%로 2010년 기준으로 OECD평균(23.8%)보다 낮음 경제규모가 비슷한 멕시코(30%), 호주(30%), 네덜란드(25.5%), 이탈리아(27.5%)와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은 편
- ◆ 법인감세를 통한 고용증가와 투자확대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는 없으며,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음

3. 법인세율에 대한 논쟁

◆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

- ◆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투자욕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조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 최고 법인세율이 OECD국가와 비교하면 낮지만, 우리나라와 무역경쟁국인 싱가포르(17%)나 홍콩(16.5%) 등의 세율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임
- ◆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고 높은 자본비용으로 인해 외국인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음
- ◆ 2000년 이후 주요 OECD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법인세율이 크게 인하되었으므로 국제적 조세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 우리나라의 GDP대비 법인세 비중(3.7%)은 2012년 기준 OECD 평균(2.9%)에 비해 높음
- ◆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줄이고 탈세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 브렉시트이후 영국이 자국내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20%의 법인세율을 15%이하로 인하하려고 하는 등 법인세율 인상이 내외국기업에 공히 부정적 환경을 조성함

4. 소결

- ◆ 법인세의 경우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글로벌 세율인하 추이가 지속되고 있어 세율인상이 쉽지 않음
- ◆ 법인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결정은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각 국가별 법인세율의 변동추이에 역행하는 것은 내국기업의 환경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외국법인의 국내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세계적인 세율 변화 추이를 보다 주시하며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 글로벌 조세경쟁 등으로 법인세율 인상이 쉽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법인세의 실질적 중세는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16-

II. 법인세

2. 법인세 개편 방향

1. 장기적인 법인세제 개편 방향

- ◆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와 적용 필요
 - ◆ OECD회원국 34개 국가 중 68%인 23개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 (효율성을 강조한 조세 정책 목표)
 - ◆ 한국(형평성 강조)
 - ◆ 2012년부터 2단계 누진세율구조를 3단계로 확대한 바 있음
 - ◆ 이러한 결과는 국제적 흐름과 상반된 측면이 발생하고 있음.
 -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세율을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단일세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재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

-17-

2. 단기적인 법인세제 방향

- ◆ 조세지출(비과세 감면 등)에 대한 조정
 - ◆ 우리나라 조세지출의 경우 일몰규정이 없는 항목의 비중이 66%(국회에산정책처 2015)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조 8,188억원, 2015년 추정)
 - ◆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출에 대한 총량제 도입

<정책토론회> 법인세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

법인세 인상 거론할 때 아니다

이 만 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1. 2017년 세제개편을 걱정하는 이유

여당이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의석을 차지한 20대 국회에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정부의 주도권은 없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덮쳐 예산안과 법률 개정안 처리 방향은 오리무중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세제개편안은 간판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내용이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을 의식한 방어적 성격이었다. 굳이 특징을 찾는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된 점을 들 수 있다. 세제지원 방식도 일부 제외대상 이외에는 모두 포함되는 네거티브 방식을 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25%로 인상하고 최저한세 세율도 17%에서 19%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41%로 높이고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고 금융소득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구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17%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당 세제개편안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 22%의 세율을 24%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구간을 더 늘려 3억 원 초과 10억 원 미만은 41%, 10억 원 초과는 45%의 세율을 적용하며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 법인세율 인상 논쟁

법인세는 법인의 영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잉여금은 주주에 대한 배당재원이 된다. 배당을 받은 개인 주주는 수령 시점에 종합소득세를 부담한다.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의 경우는 사업소득금액을 다른 종합소득 항목과 합산해 소득세를 산출한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합한 법인기업 주주에 대한 세금은 개인 사업주의 사업소득세 보다 많은 것이 보통이

다. 그러나 사업소득과는 달리 배당소득은 법인이 소득을 얻은 시점이 아니라 주주가 배당을 수령한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배당금 수령을 계속 미루면 법인 기업이 현재가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배당금 수령을 미룬 채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면 배당소득세는 없고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대신 부과된다. 배당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 최고세율은 38%이지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중소기업 주식은 10%이고 대기업 주식은 20%다. 이런 차이와 배당소득 이중과세 완화를 위한 Gross-up 방식 때문에 법인기업 주주가 개인 사업소득자보다 유리한 세금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발생된다.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경영을 맡는 것이 원칙이다. 이사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소득세보다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 기업은 미래의 예상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를 산정해 투자원가와 비교하고 현금유입 현재가치가 더 많을 경우 당해 투자안을 채택한다. 법인세를 내고 남은 현금을 따지기 때문에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현금유입이 늘어나 투자안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이에 따라 투자가 늘어난다. 기업과 주주를 뒤섞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를 부자감세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증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경기전망, 노사관계, 정부의 규제 및 소요 부동산 가격 추이 등에 영향을 받는다. 법인세를 인하해도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은 다른 요소를 간과한 것이다. 문제는 투자가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3. 법인세율의 추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단계 누진세율 체계에서 법인세의 높은 세율은 오랫동안 30%대를 유지하다가 김영삼 정부에서 28%로 인하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계속 인하해 25%까지 내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에 20%까지 연차적으로 낮추는 법인세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2%로 낮춘 다음 20%로 낮추는 단계는 시행도 못하고 법률 개정으로 폐기됐다. 법인세율 추가 인하를 규정한 세법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외국자본은 속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제적 신뢰는 망가졌다.

국제적 추세와 동떨어진 법인세 인상을 또 다시 강행할 경우 국제 사회의 경계대상이 될 것이다. 투자의 최대 적은 위험과 불확실성이다. 예상 밖의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위험요인이다.

[표 2]에서 보인 바와 같이 2008년 이후 17개 OECD 국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재정위기가 심각한 6개 국가만 소폭 인상했다. 해외자본이 투자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법인세율은 주요한 고려사항이다.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의사결정도 법인세율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노동법 등 다른 규제도 개혁돼야 외국인 투자가 늘고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복귀 기업이 늘어난다.

[표 1] 우리나라 법인세율 추이

	1994	1995	1996	1997 ~2002	2003 ~2005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억원	20%	18%	18%	16%	15%	13%	11%	11%	10%	10%
1~2억원										
2~200억원	34%	32%	30%	28%	27%	25%	25%	22%	22%	20%
200억원~										22%

[표 2] 2008년 기준 OECD 국가 법인세율 인하 실태

국가별	2008년 세율	인하된 세율 (변동연도)
캐 나 다	19.5%	15% (2012)
체 코	21%	19% (2010)
덴 마 크	25%	23.5% (2015)
핀 란 드	26%	20% (2014)
이 스 라 엘	27%	25% (2016)
일 본	30%	23.4% (2016)
룩 섴 부 르 크	22%	21% (2009)
네 델 란 드	25.5%	25% (2011)
뉴 질 랜 드	30%	28% (2011)
노 르 웨 이	28%	25% (2016)
에 스 토 니 아	21%	20% (2015)
포 르 투 갈	25%	21% (2015)
슬 로 베 니 아	22%	17% (2013)
스 웨 덴	28%	22% (2013)
스 페 인	30%	25% (2016)
우 리 나 라	25%	22% (2009)
영 국	28%	20% (2015)

) 인상국가는 칠레,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멕시코, 슬로바키아 등 재정위기 국가임.

(자료: OECD tax database에서 발췌)

4. 법인세율 인상할 여건인가

법인세율을 경제침체와 고용불안이 극심한 시점에 급하게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다. 3년 한시법인 기업소득 환류세가 2017년까지 존속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법인세제를 고용 중심으로 개선하면서 세수를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가족 중심의 부동산 관리 법인의 경우 고용을 통한 인건비 지출은 거의 없고 개인적 사용이 의심되는 차량유지비와 접대비가 손금에 포함된다. 이런 손금이 임대수입에서 차감되면 법인세가 줄어든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인건비를 수입금액과 비교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는 차량유지비나 접대비 등의 손금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고용비중이 높은 기업의 인건비에 대해 손금 인정을 우대하고 고용비중이 낮은 기업은 그 정도에 따라 손금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법인세를 올려 일자리 예산을 짜내기 보다는 법인세제의 합리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5. 다른 세수증대 방안은 없나

부가가치세 세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세율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갑자기 닥칠 통일비용에 대비해 부가가치세 세율의 여유를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과다한 것이 문제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일반 고속버스 요금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를 인지하는 국민은 드물다.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될 당시와 비교해 면세로 전환된 부분을 모두 찾아내 면세의 합리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백화점 식품코너에서 팔리는 생선회가 부가가치세 면세라는 점이 주목 대상이다.

국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세정을 관장하는 국세청의 역할도 중요하다. 일부 법령해석이나 운영지침을 만들기도 하지만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조세법령에 따라 세금을 걷는다.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효율성이 높아졌고 집결한 과세 자료를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세수가 크게 늘었다. 세정 혁신으로 수입금액이 누락 없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함께 증가된다. 구글 등 다국적기업이 조세조약 및 국제적 과세기준의 허점과 각국 세법의 미비점을 간파하고 실질적 경제활동이 없는 저세율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보다 적극적인 국제조세 전문가 육성을 통해 놓치는 세금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

법인세 인상을 논하기 이전에 준조세 부담부터 없애라

송 헌 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요새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인세 인상의 논리는 매우 간단하다. 기업은 돈을 쌓아 놓고 있는데 월급쟁이에게만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다. 즉, MB 정부시절 법인세율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완전히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난 이상 MB 정부 이전시절로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으로는 가게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데 기업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법인세를 올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즉, 법인세 증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소득재분배 정책에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이다. 통계적 추이를 보면 가게보다 기업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맞다. GDP 가운데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계열상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약 35% 정도이던 것이 40%를 넘어선 반면 노동소득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엄밀히 이야기 하면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가 돈을 번 것이다. 주주는 기업의 이윤 중 일부를 배당소득으로 분배받는다.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기업이 이윤을 많이 창출하면 소득세수가 늘어난다. 물론 2014년 7월 정부에서 기업의 배당률이 너무 낮은 점을 문제 삼아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을 만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사실이다. 즉, 현재 상태에서 배당소득세 확보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올바른 대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증가된 세금이 온 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기업은 한계비용 상승만큼 상품의 가격을 인상할 것이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균형생산량을 줄여들기 때문에 생산에 필요한 요소수요도 줄어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품을 소비하는 국민과 기업에 고용되는 근로자들이 법인세 인상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만일 법인세가 기업의 경제적 이윤에 부과된다고 하면 법인세율을 얼마로 정하던 상

관없이 기업은 경제적 이윤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즉,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하려고 노력하여 비용극소화를 달성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법인세는 기업의 회계적 이익에 부과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는 그리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소득세제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이익에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다양한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손금으로 불인정하거나 공제한도를 규정하는 경우도 많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이와 같이 기업의 최종납부 법인세가 결정되는 매우 복잡한 과정에서 세율이 인상되면 기업은 이에 반응하여 기업의 행태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에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발생한다. 이것이 첫 번째로 법인세 인상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다만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 대한 감면을 줄이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미미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앞서 지적한 것처럼 기업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 소비자 등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과 같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법인세의 인상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여지가 있다. 기업의 모든 투자결정은 위험부담을 수반하고 기업가는 이에 대한 보상을 이윤으로 받는데 법인세가 인상되면 보상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이전에는 현재가치로 환산한 편익이 비용을 초과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투자를 하였으나 법인세 인상이후에는 한계적인 상황에서 투자를 망설이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기업의 투자위축은 전체 경제의 소득을 축소시키므로 근로자와 소비자 소득의 감소를 유발하므로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

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고 대신 자본재 투입을 늘리거나, 혹은 투자를 늘리지 않는 것은 현재의 시장상황이 그렇게 하도록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일 개연성이 높다. 그러므로 법인세의 인상은 기업의 고용과 투자에 대한 성향을 오히려 더욱 부정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과연 현재 법인세 인상을 심각하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차분히 생각해볼 때다.

물론 현실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경제학 이론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업경제 환경에 적용되었을 수도 있다. 특히나 작금의 현실을 직

시한다면 과연 이러한 경제적 논리에 근거하여 법인세 인상 효과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정치권력이 기업에게 기부금을 강요하고 기업이 이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 하에서는 법인세율에 대한 논의보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기업의 정치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휘둘리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권력과 대가성 있는 거래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는 그러한 연후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토론의 결과를 정치권에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 접근이 될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38, 3층(북창동 단암빌딩 별관)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